

식품진흥기금 용자 공고문(안)

강남구 공고 제2024 - 253호

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을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. 29.

강 남 구 청 장



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

1. 2024년도 용자규모 : 6억원

○ 시설개선자금 3억원,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억원

2. 용자종류 및 대상

용자종류	용자대상	사용용도
시설개선자금	▶ 일반, 휴게, 제과점 ▶ 식품제조업소 ▶ 어린이보호식품우수판매업소	▶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※ 식기·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※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 ※ 인건비, 임대료, 보증금, 용자금 상환 등 제외
모범음식점 육성자금	모범음식점 지정 업소	▶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,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※ 식기·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※ 인건비, 임대료, 보증금, 용자금 상환 등 제외
화장실 시설개선자금	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(신고) 받은 식품접객업소	▶ 화장실 시설개선

3. 용자 및 상환조건

구분	대 상	용자 한도액	용자 금리	상환기간 및 상환조건
시설 개선 자금	·식품제조업소 [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(신고)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]	6억원 (총 소요금액의 80%)	1%	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	·일반, 휴게, 제과점 [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(신고)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 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자]	1억원 (총 소요금액의 80%)		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	·식품접객업소 화장실 [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(신고)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]	2천만원 (총 소요금액의 80%)		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	·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 [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]	3천만원 (총 소요금액의 80%)		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육성 자금	·모범음식점 [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]	5천만원		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※ 용자제외 대상(공통)

-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
(단, 유흥·단란주점의 화장실 개선자금은 가능,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)
- 식품진흥기금 용자금 상환 중인 자
- 동일인에 대한 중복용자 (업소 수와 무관)

4. 용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 대상

- 용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용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
-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혐오식품 취급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
-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모범음식점,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
-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(강남구)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

5. 용자 취급은행 :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(강남구 학동로 426)

6. 용자신청

가. 신청기간 : 연중

나. 신청장소 : 위생과 식품위생팀 (강남구보건소 2층)

다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라. 구비서류

구 분	구 비 서 류	비고
시설개선자금	1. 용자신청서 2.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(세부건적서 첨부) 3. 사업이행확약서 4. 영업신고증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5. 임대차계약서 6.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(시설개선 완료 후 제출) - 세금계산서,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	
모범음식점 육성자금	1. 용자신청서 2.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3. 사업이행확약서 4. 영업신고증·사업자등록증·모범음식점 지정증 사본 각 1부 5. 임대차계약서	

7. 기타문의 :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(☎ 02-3423-7076)